

韓國大學教育協議會

定 款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協議會는 全國大學(校)의 學事·財政·施設 등 主要關心事에 대한 自律의 協議와 研究調整을 通하여 相互協力하고 必要한 事項을 政府에 建議, 政策에 反映함으로써 大學의 自主性을 提高하고 公共性을 昂揚하여 大學教育의 健全한 發展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名稱) 이會는 “社團法人 韓國大學教育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라 한다.

第3條(事務所의 所在地) 이協議會의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둔다.

第4條(事業) 協議會는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한다.

1. 大學教育 制度의 研究, 協議 및 調整에 관한 事項
2. 學生選拔 및 指導에 관한 事項
3. 公納金策定에 관한 事項
4. 財政 및 會計制度에 관한 事項
5. 豐算編成 및 運用에 관한 事項
6. 報酬制度에 관한 事項
7. 大學間 教授交流와 學術情報의 交換 및 學點交換 認定에 관한 事項
8. 施設共同活用에 관한 事項
9. 大學의 學事運營에 관한 研究와 評價에 관한 事項
10. 其他大學(校) 共同關心事에 대한 事項
11. 文教部長官으로부터 委任받은 事項
12. 其他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第2章 會 員

第5條(會員資格) 이協議會의 會員은 大學(校)의 總·學長으로 한다.

第6條(會員의 權利와 義務) ①이協議會의 會員은 會費를 納入하고 이定款에 定한 權利와 義務를 갖는다.
②大學教職員으로서 當該 大學 總·學長의 委任을 받은 者는 會員의 權利와 義務를 갖는다.

第3章 任 員

第7條(任員의 種類) ①이協議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會長 1人
 2. 副會長 3人
 3. 理事 20人(會長, 副會長, 事務總長包含)以內
 4. 監事 2人
- ②第20條에 規定된 事務總長은 當然職 常任理事가 된다.

第8條(任員의 任期) ①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②任員의 任期中 缺員이 생긴 때에는 理事會에서 補選하고, 補選에 의하여 就任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的 殘餘期間으로 한다.

第9條(任員의 選任方法) ①任員은 總會에서 選出하여 文教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就任한다.

②任期前의 任員의 解任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文教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8條 第2項에 의한 補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第10條(任員의 任務) ①會長은 이協議會를 代表하고 協議會의 業務를 統理한다.

②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이 事故가

있을 때 會長이 指名한 副會長 또는 年長者가 會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③ 理事會에 出席하여 協議會의 業務에 관한 事項을 議決하며, 理事會 또는 會長으로부터 委任받은 事項을 處理한다.

④ 監亦는 이 會의 會計와 業務를 監查하며 監查結果 不正 또는 不適當한 點이 있음을 發見한 때에는 理事會에 그 是正을 要求하고 文敎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4章 總 會

第11條(總會의 機能) 總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任員選出에 관한 事項
2. 定款變更에 관한 事項
3. 豫算 및 決算의 承認
4. 事業計劃의 承認
5. 其他 重要事項

第12條(總會의 召集) ①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나누되, 定期總會는 年 1회, 臨時總會는 會長이 隨時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② 會長은 會議案件을 明記하여 7日前에 各會員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緊急을 要하는 事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3條(總會召集의 特例) ① 會長은 다음의 各號에 該當하는 召集要求가 있을 때에는 그 召集要求日로부터 20日以內에 總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1. 在籍理事過半數가 會議의 目的을 提示하여 召集을 要求한 때.

2. 會員 3分의 1以上이 會議의 目的을 提示하여 召集을 要求한 때.

② 總會召集權者가 闕位하거나 또는 이를 忌避함으로써 總會召集이 不可能한 때에는 在籍理事過半數 또는 會員 3分의 1以上的 賛成으로 總會를 召集할 수 있다.

③ 第 2項에 의한 總會는 年長者인 副會長이 그 議長이 된다.

④ 會長은 부득이한 事由가 있거나 時期의 으로 總會를 召集하기 困難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書面에 의한 會員의 意思를 收合하여 總會에

가름할 수 있다.

第14條(總會의 議決定足數) ① 總會는 在籍會員過半數의 出席으로 開會한다.

② 總會의 議事는 出席한 會員過半數의 賛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同數인 때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第15條(總會議決除斥事由) 議長 또는 會員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議決에 參與하지 못한다.

1. 任員就任 및 解任에 있어 自身에 관한 事項
2. 金錢 및 財產의 授受를 隨伴하는 事項으로서 會員自身 또는 會員이 屬한 大學과 協議會의 利害가 相反되는 事項

第5章 理 事 會

第16條(理事會의 機能) 理事會는 다음의 事項을 審議·議決한다.

1. 業務執行에 관한 事項
2. 事業計劃運營에 관한 事項
3. 豫算 및 決算에 관한 事項
4. 總會에서 委任받은 事項
5. 이 定款에 의하여 그 權限에 屬하는 事項
6. 其他 重要事項

第17條(議決定足數) ① 理事會는 在籍理事過半數의 出席으로 開會한다.

② 理事會의 議事는 出席理事過半數의 賛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同數인 경우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第18條(理事會의 召集) ① 理事會는 會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② 理事會를 召集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會議 7日前에 會議의 目的을 明示하여 各理事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緊急을 要하는 事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9條(理事會召集의 特例) ① 在籍理事過半數로부터 會議의 目的을 提示하여 召集을 要求한 때에는 會長이 그 召集要求日로부터 10日以內에 理事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② 理事會의 召集權者가 闕位하거나 또는 이를 忌避함으로써 7日以上 理事會 召集이 不可能

할 때에는 在籍 理事過半數의 賛成으로 召集 할 수 있다. 이 경우 年長者인 副會長이 그 議長이 된다.

第6章 組 織

第20條(事務總長) ①協議會에 事務總長을 두되 事務總長은 現職教員이 아닌 者 中에서 理事會의 議決과 文敎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會長이 任用한다.
②事務總長은 所屬職員을 監督하고 會長 또는 理事會에서 委任한 範圍內에서 協議會의 業務를 統理한다.

第21條(下部組織) ①事務總長밑에 專門委員과 各部, 그리고 專門領域別로 必要한 研究委員會를 둔다.
②專門委員과 各部의 部長은 大學事務에 關한 學識과 經驗이 있는 者 中에서 事務總長의 提請으로 會長이 任用한다.
③專門領域別 研究委員會는 必要할 때마다 設置하여 委員은 大學의 處·室·課長 및 斯界 專門家中에서 事務總長이 提請하여 會長이 委嘱한다.
④專門委員은 專門領域別 研究委員會를 主管하고 各部長은 事務總長의 命을 받아 所管業務를 掌理한다.
⑤大學의 學事와 行·財政制度에 關한 專門의 研究·開發을 위해 研究所를 附設할 수 있다.

第22條(諮詢委員會) 協議會運營全般에 關한 會長 및 事務總長의 諮問에 應하기 위하여 諮問委員會를 둘 수 있고 構成과 運營에 關한 事項은 따로 定한다.

第23條(職員) ①協議會에서 職制가 定하는 바에 따라 必要한 職員을 둔다.
②職制, 職員의 任用, 服務, 報酬 및 賞罰에 關한 事項은 따로 定한다.

第7章 財產 및 會計

第24條(財政) 이 協議會의 財政은 다음의 收入金으로 充當한다.

1. 會員의 會費
2. 運營費支援을 위한 政府의 出捐 및 補助金 또는 寄附金
3. 其他收入

第25條(會計年度) 이 協議會의 會計年度는 政府會計年度에 따른다.

第26條(事業計劃과豫算) 事務總長은 이 協議會의 年間事業計劃과豫算을 每會計年度 1月前까지 作成하여 理事會의 議決과 總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27條(豫算外의 債務負擔등) 豫算外의 債務의 負擔이나 債權의 抛棄는 總會의 議決을 거쳐 文敎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28條(決算) 事務總長은 每會計年度의 歲入·歲出 決算書를 作成하여 翌年度 3月末까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總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8章 捕 則

第29條(定款改正) 이 協議會의 定款을 改定하고자 할 때에는 總會에서 在籍會員 3分의 2以上의 賛成으로 議決하여 文敎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30條(解散) ①이 協議會를 解散하고자 할 때에는 總會에서 在籍會員 3分의 2以上의 賛成으로 議決하여 文敎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解散當時의 殘餘財產은 總會의 議決을 거쳐 文敎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處理한다.

第31條(施行規程) 이 定款에 規定되지 아니한 事項과 協議會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會長이 定한다. 다만, 協議會運營에 基本이 되는 事項이나 基本財產과 關聯되는 事項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附 則

이 定款은 總會에서 議決된 날로부터 施行한다(1982. 8. 20.).

附 則

- ①(施行日) 이 定款은 文敎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1982. 10. 8.).
②(經過措置) 이 定款 施行當時의 大學敎育協議會의 任員은 이 定款에 의한 社團法人 韓國大學敎育協議會의 任員으로 選任된 것으로 보며, 그 任期는 從前의 規定에 의하여 選任된 날로부터 起算한다.

諮詢委員會組織運營規程

第1條(目的) 韓國大學敎育協議會(以下 “協議會”라 한다)의 運營에 관하여 會長 및 事務總長의 諮問에 對하게 하기 為하여 會長 所屬下에 諮問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第2條(機能) 委員會는 다음 각號의 事項에 대하여 會長 및 事務總長의 諮問에 應하여 審議한다.

1. 定款에서 定하여진 事業
2. 總會 및 理事會의 議決에 의한 事業
3. 文敎部로 부터 委任된 事項 및 協議會 運營에 관한 重要事項

第3條(組織) ①委員會는 委員長 1人, 副委員長 1人을 包含한 15人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②委員長과 副委員長은 委員會에서 選任한다.
③委員은 會員大學과 教育研究機關 및 國聯機關所屬人士로서 分野別·機能別로 經驗과 學識이 豐富한 者 中에서 事務總長의 提請에 의하여 會長이 委嘱한다.

④委員의 任期는 1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으며, 補阙로 委員이 된 者의 任期는 前任者的 残任期間으로 한다.

第4條(委員長等의 職務) ①委員長은 委員會의 職務를 統轄하며, 委員會를 代表한다.

②副委員長은 委員長을 補佐하며,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5條(會議) ①委員會의 會議는 會長 또는 事務總長이 必要에 따라 召集한다.

②委員會를 召集하고자 할 때에는 會議 5日前에 各 委員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緊急을 要하는 事項은 그れ하지 아니하다.

③會議는 委員長이 主宰하며, 議決을 要하는 事項에 대하여는 在籍委員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賛成으로 決定하되, 可否同數인 情況에는 委員長이 決定한다.

第6條(手當) ①委員會에 出席한 委員에 대하여는 豫算의 範圍內에서 手當을 支給한다.

②委員會의 委員中에서 必要에 따라 協議會의 業務를 遂行하였을 때에는 豫算의 範圍內에서 實費를 支給할 수 있다.

第7條(幹事) ①委員會에 幹事 1人을 둔다.

②幹事는 協議會 職員中에서 事務總長이 任命한다.
③幹事는 委員長의 命을 받아 委員會의 庶務를 處理한다.

附 則

이 規程은 理事會에서 議決한 날로부터 施行한다(1982. 6. 14.).

研究委員會組織運營規程

第1條(目的) 韓國大學敎育協議會(以下 “協議會”라 한다)의 業務와 事業을 보다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事務總長 所屬下에 專門領域別로 必要한 研究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第2條(機能) 委員會는 事務總長이 提示하는 特定한 業務나 事業에 대하여, 研究·調查·審議하고, 그 結果를 協議會에 報告 또는 提出한다.

第3條(組織) ①委員會는 專門領域別로 必要할 때마다 設置하며, 事業의 目的이 達成되거나 業務가 終了한 때 解體된다.

②各 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包含한 10人以

내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③ 委員長은 委員會에서 選任한다.

④ 委員은 會員大學(校)의 處長·室長·課長 및 斯界專門家中에서 專門領域別로 經驗과 學識이 豐富한 者를 事務總長이 提請하여 會長이 委嘱한다.

第4條(委員長의 職務) ① 委員長은 委員會의 業務를 統轄하여 委員會를 代表한다.

② 委員長이 事務가 있을 때에는 委員長이 指名한 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5條(會議) ① 委員會의 會議는 事務總長이 必要에 따라 召集한다.

② 委員會를 召集하고자 할 때에는, 會議 5日前에 各 委員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緊急을 要하는 事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會議는 委員長이 主宰하며, 議決을 要하는 事項에 대하여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賛成으로 決定하되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委員長이 決定한다.

第6條(手當) ① 委員會에 出席한 委員에 대하여는 豫算의 範圍內에서 手當을 支給한다.

② 委員會의 委員中에서 必要에 따라 協議會의 業務를 遂行하였을 때에는 豫算의 範圍內에서 實費를 支給할 수 있다.

第7條(事務補助) 各 委員會의 運營에 관한 事務處理는 協議會 職員이 行한다.

附　　則

이 規程은 理事會에서 議決한 날로부터 施行한다(1982. 6. 14.).

任員 및 各種委員會委員

理事會任員名單

職　位	姓　名	所　屬
理事兼會長	朴吉眞	圓光大學校
理事兼副會長	張忠植	檀國大學校

職　位	姓　名	所　屬
理事兼副會長	鄭樹鳳	東亞大學校
"	朴在奎	公州師範大學
理事兼事務總長	張仁淑	
理　事	權善赫	서울大學校
"	安世熙	延世大學校
"	金玉烈	淑明女子大學校
"	鄭義淑	梨花女子大學校
"	郭鍾元	祥明女子師範大學
"	文鴻柱	釜山大學校
"	韓明洙	慶北大學校
"	吳恒基	全南大學校
"	徐明源	忠南大學校
"	金明會	淸州大學校
"	尹泰林	慶南大學校
"	金致河	仁川大學
"	金永敦	蔚東大學
"	李炳熙	漢陽大學校
監　事	朴奉培	監理教神學大學
"	玄平孝	濟州大學校
"	李泰榮	大邱大學校

諮詢委員會委員名單

職　位	姓　名	所　屬	備　考
委員長	李賢宰	서울大學校	
委　員	崔正燕	延世大學校	
"	姜雨熒	高麗大學校	
"	李元萬	慶熙大學校	
"	金德中	西江大學校	
"	李京求	成均館大學校	
"	金容漢	建國大學校	
"	梁琮懿	全北大學校	
"	金豪權	嶺南大學校	
"	丁得圭	全南大學校	
"	鄭英彩	中央大學校	
"	崔相榮	國會議員	
"	劉承三	서울新聞社	

大學評價研究委員會 委員名單

職位	姓名	所屬	備考
委員長	崔正燕	延世大學校	
委員	趙完圭	서울大學校	
"	金蘭洙	延世大學校	
"	李星珍	韓國行動研究所	
"	池應榮	亞洲大學校	
"	李寬	蔚山工科大學	
"	韓瑛煥	中央大學校	
"	李定根	職業訓練研究所	
"	鄭宇鉉	高麗大學校	

大學院運營評價小委員會名單

職位	姓名	所屬	備考
委員長	金蘭洙	延世大學校	
委員	吳萬植	서울大學校	
"	崔圭完	서울大學校	
"	劉哲秀	高麗大學校	
"	李星鎬	延世大學校	
"	金萬圭	仁荷大學校	
"	吳漢鎮	韓國外國語大學校	
"	高東成	忠南大學校	
"	鄭泰東	慶南大學校	
"	吳成都	全北大學校	
"	韓鍾喆	延世大學校	

大學財政研究委員會委員名單

職位	姓名	所屬	備考
委員長	裴鐘根	東國大學校	
委員	李勉榮	弘益大學校	
"	宋光憲	梨花女子大學校	
"	崔起俊	延世大學校	
"	張龍國	檀國大學校	
"	金元圭	서울大學校	
"	尹正一	韓國教育開發院	
"	南相午	서울大學校	
"	李喆晟	成均館大學校	

學問領域別 大學評價小委員會名單

職位	姓名	所屬	備考
委員長	池應榮	亞洲大學校	工學系分野
委員	李相培	延世大學校	
"	金昌孝	서울大學校	
"	李圭澤	全北大學校	
"	李長茂	서울大學校	
"	金圭南	釜山大學校	
"	金眞一	金漢陽大學校	
"	姜雄基	高麗大學校	
委員長	趙完圭	서울大學校	基礎科學系分野
委員	金顯男	亞洲大學校	
"	金始中	高麗大學校	
"	康榮熙	延世大學校	
"	趙泰根	西江大學校	
"	李商萬	서울大學校	

大學評價委員會

大學運營綜合評價小委員會名單

職位	姓名	所屬	備考
委員長	崔正燕	延世大學校	
委員	權肅一	서울大學校	
"	邊太燮	서울大學校	
"	金鎮萬	高麗大學校	
"	金長煥	延世大學校	
"	陳德奎	梨花女子大學校	
"	金尚鎬	中央大學校	
"	李熙明	西江大學校	
"	康宇哲	梨花女子大學校	

特性化工科大學評價小委員會名單

職位	姓名	所屬	備考
委員長	李寬	蔚山工科大學	
委員	李東寧	서울大學校	
"	鄭相九	亞洲大學校	
"	羅商均	蔚山工科大學	

■ 協議會主要日誌 ■

- | | | | |
|------------------|---|------------------|--|
| ○ 4. 2. | 全國 97個大學(校)總學長 參席下
에 創立總會 및 第 1 次 理事會開
催 | ○ 6. 4
~10. | 入試制度改善을 위한 在京主要大
學 訪問協議 |
| ○ 4. 7. | 業務開始 | ○ 6. 14. | 第 3 次 理事會開催 |
| ○ 4. 8. | 本協議會 任員就任을 定款에 의
거, 文教部長官이 承認 | ○ 6. 16.
~22. | 各種 大學評價業務推進을 위한 協
議會開催 |
| ○ 4. 12. | 準備委員會로부터 創立關係 書類
引受 | ○ 6. 23.
~24. | 大學教育協議會諮詢委員會委員委
囑(13名)
專門領域別委員會中
· 大學財政研究委員會委員委囑
(9名) |
| ○ 4. 15. | 文教部 大學局 幹部等과 業務協
議會開催 | ○ 6. 28. | · 大學評價研究委員會委員委囑
(9名) |
| ○ 4. 20. | 各大學 및 研究機關의 資源人士
를 招請하여 業務開發을 위한懇
談會開催 | ○ 6. 30. | 第 1 次 大學財政研究委員會會議
開催 |
| ○ 4. 24. | 第 2 次 理事會開催(82年度 事業計
劃 및 實行豫算案 審議) | ○ 7. 4
~21. | 第 1 次 諮問委員會會議開催 |
| ○ 4. 24. | 83年度 本協議會 事業費 國庫補
助金 申請 | ○ 7. 5. | 學問領域別評價中 工業系分野 現
地評價實施(IBRD 借款對象大學) |
| ○ 4. 30. | 主要大學 補職教授와의 懇談會開
催 | ○ 7. 6
~9. | 第 1 次 大學評價研究委員會會議
開催 |
| ○ 5. 6. | 現行大學入試制度의 問題點分析
과 改善方案研究를 文教部로부터
受託 | ○ 7. 14. | 特性化 工科大學運營 및 改善診
斷에 관한 現地 訪問評價實施 |
| ○ 5. 7. | 82年度 研究課題推進을 위한 參
與教授 協議會開催 | ○ 7. 19. | 第 2 次 大學評價研究委員會會議
開催 |
| ○ 5. 18. | 大學의 財政構造에 관한 分析研
究와 大學의 各種 評價業務를 文
教部로부터 受託 | ○ 7. 20. | 大學教育協議會의 法制化推進을
위한 資料提出(文教部) |
| ○ 5. 24.
~25. | 入試制度 및 各大學의 實情把握
을 위한 教務處(課)長 協議會開
催
※ 在京綜合大學 9個校, 國立單
科大學 8個校, 私立單科大學 17
個校 | ○ 7. 26.
~31. | 各種評價委員會 分野別小委員會
委員委囑
· 大學運營綜合評價 : 9名
· 大學院運營評價 : 10名
· 基礎科學分野評價 : 6名 |
| ○ 6. 1. | 入試制度에 관한 文教部와의 協
議(大學別 實情綜合 및 協議) | ○ 7. 27. | 學問領域別中, 工業系分野評價結
果會議開催 및 資料分析作業(中
間報告書 作成) |
| ○ 6. 30. | 本協議會의 業務推進을 위한 大
統領 秘書室(教育文化)과의 協議 | ○ 8. 2. | 學問領域別中, 基礎科學系分野評
價 小委員會 開催 |
| | | ○ 8. 12. | 各種 評價에 관한 書面資料書式
作成 및 發送 |
| | | ○ 8. 18. | 學問領域別評價中, 工業系分野
評價結果의 中間報告書를 文教部
長官에게 報告 |
| | | ○ 8. 19. | 大學院運營評價委員會會議開催
○第 2 次 大學財政委員會會議開 |

	催	
○ 8. 20.	○第 4 次理事會開催	○ 10. 19. 大學運營 綜合評價小委員會 會議 開催(評價報告書 細部事項 協議)
○ 8. 30.	第 2 次 總會開催	○ 10. 21. 大學財政 研究委員會 會議開催
	本協議會 會誌發刊을 위한 懇談 會開催(專門家 및 同分野大學教 授)	○ 10. 27. 大學運營綜合評價小委員會 開催 (評價中間報告書의 檢討)
○ 9. 2.	大學運營綜合評價小委員會 開催	○ 10. 29. 第五次理事會開催
○ 9. 7.	大學教授 授業評價 研究委員 懇 談會開催	○ 10. 30. 會誌“大學教育”發刊을 위한 原稿 募集 案內文發送(全國 97個大學 校)
○ 9. 13.	大學財政構造分析研究關係 實務 者會議 開催	○ 10. 30. 大學院運營綜合評價小委員會會議 開催
○ 9. 24.	第 2 次 諮問委員會 會議開催	○ 11. 2. 教授 授業評價研究資料 蒐集을 위 한 設問書發送
○ 9. 25.	大學財政研究委員會會議開催	○ 11. 3. 82學年度大學運營綜合評價中間報 告書提出(文教部)
○ 9. 27.	特性化 工大 評價委員會 會議開 催	○ 11. 4. 美國大學關係者 來訪懇談會 開催
○ 10. 6.	事務所移轉(私學年金會館 501號 117.71坪)	○ 11. 5. 會誌“大學教育”編輯委員委嘱 (7名)
○ 10. 8.	基礎科學系 評價委員會 會議開催	○ 11. 9. 第一次會誌編輯委員會開催
○ 10. 8.	“社團法人 韓國大學教育協議會” 是 法人設立許可(文教部長官)	○ 11. 12. 學問領域別呈 133個 各種學會 에 資料協助要請
○ 10. 13.	在京 主要大學 學生處長 懇談會 開催(運動部運營에 관한 意見交 換；在京綜合大 12校)	○ 11. 18. 一部 私立大學 總長懇談會(私學 財政運營關係)
○ 10. 14.	本協議會 案內와 資料蒐集 및 情 報交換을 위하여 外國의 25個 類 似機關에 公翰發送	○ 12. 3. 第二次會誌編輯委員會開催
		○ 12. 5. 大學院, 基礎科學分野評價中間報 告書提出(文教部)